

조 정 신 청 서

접 수 인

신 청 일 2000.00.00.

사 건 명 공사대금

신 청 인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ㅇㅇ시ㅇㅇ구ㅇㅇ길ㅇㅇ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ㅇㅇ시ㅇㅇ구ㅇㅇ길ㅇㅇ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0 . . .

조정기일소환장 통

위 서류를 영수함

20 ○ ○ . ○ . ○ . 신청인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조정신청사항가액	금 1,923,708원	인지대	금 1,000원	송 달 료	금 32,500원
	-, -,,	_ , ,,		0	

(인지첩부란)

신 청 취 지



- 1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,923,708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. 〇.부터 이 사건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.
- 2.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원 인

1. 공사제공내역

(1)공사한 분야 : 신축건물의 미장공사(노임하도급)

(2)공사현장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상가건물신축공사장

(3)공사제공기간: 2000. 0. 0.부터 2000. 0. 00.까지

(4) 공사대금 : 금 1,923,708원

(내역: 약정공사대금 5,000,0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1,923,708원)

(5)기타 약정: 위 건물의 사용검사를 마치면 위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음.

2. 기타

피신청인은 위 건물의 사용검사를 마치면 위 총공사대금 5,000,000원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 1,923,708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위 건물의 사용검사가 끝난지급까지 위 금 1,923,70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공사계약서

1.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(사용검사)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신청서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

2000. 00. 00.

위 신청인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제출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기간	○○년(¤	☞소멸시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	· 수만큼의 부본 제·	출 관련	! 법 규	민사조정법		
불복절차 ·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 및 기간 터 2주일 이내(민사조정법 제34조)							
비 용	·조정수수료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		
기 타	• 민사조정법 제30조,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,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,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 33690 판결).						

※ (1)관할법원(민사조정법 제3조)

- 가.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 지원,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함.
 - 1.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소재지
 - 2.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
 - 3. 피신청인의 근무지
 - 4.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
 - 5. 손해발생지
- 나. 조정사건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음.
- 다.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 등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조정신청